

음악영재 아카데미 규정

□ 제정 : 2011. 10. 0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잠재력 있는 음악영재를 조기 발굴, 교육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수원대학교 부설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라고 칭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17(산2-2) 번지에 둔다.

제2장 수업인한 및 입학 자격

제4조(수업연한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년별로 1년으로 한다.

제5조(입학자격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에 해당 학년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a. 일반영재 -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지원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로
 - b. 예비영재 - 전국 만 5세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전공악기를 선택, 이수 하려는 자로 단, 비올라, 콘트라베이스, 관악기, 성악은 고1까지 가능
 2. 1차 서류전형, 2차 실기평가, 심층면접 평가에서 선발 예정인원 내의 등위의 성적을 얻은자.
- ※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2조 2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입학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 절차를 거쳐 정원의 10% 이내에서 선발 한다.
- 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
 - (2)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거주하는 자
 - (3) 행정구역상 읍·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
 - (4) 그 밖에 사회·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자

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

제6조(학급 수, 학급당 학생 수) 이론수업 학급 수는 평가에 의해 상·중·하로 나뉘어 각 1개 학급으로 총 3개 학급으로 하며 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편성한다.

※단 필요에 의해 학급 수 조절 가능

제4장 교육과정, 수업일수 및 평가

제7조(교육과정) 음악영재의 교육과정은 이론수업 및 개인레슨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개인레슨

- a. 일반영재 - 개인실력 평가후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에 출강하는 교·강사에 배정을 하여, 1년기준 총24번의 레슨 1회시간 50분의 지도로 편성 한다.
- b. 예비영재 - 개인실력 평가후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에 출강하는 강사에 배정을 하여, 1년 기준 총24번의 레슨 1회시간 50분의 지도로 편성 한다.

2. 이론수업

이론실력 평가후 상·중·하로 나뉘어 각 수준별로 서양음악기초이론, 시창과 청음 교재를 선정, 선정한 교재를 중심으로 1년기준 총12번의 이론수업 서양음악기초이론 1회시간 50분 시창과 청음 1회시간 50분의 지도로 휴무토요일에 편성 한다.

제8조(수업일수) 각 영재별로 레슨 주 1회(1회당 50분)씩 년 24주로 총 24일로하며, 이론수업 월 2회(1회당 서양음악기초이론 50분, 시창과 청음 50분)씩 년 12주로 총12일로 한다.

제9조(평가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비정규과정(방과 후 프로그램) 운영으로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, 학기당 실기발표회 1회씩 년 총 2회 실시하며, 연간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서술식하여 그 내용을 년 1회 소속학교에 통보한다.

제5장 학년, 학기, 휴업일

제10조(학년, 학기) 매 학년은 당해 3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하며 학기는 1학기 4월,5월,6월 2학기 9월,10,11월로 구분한다.

제11조(휴업일) 연간 계획에 의거 수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행사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
제6장 과정의 수료

제12조(수료) 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호에 따른다.

1. 각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수업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2.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시간 수의 80% 이상이어야 한다.

제7장 입학

제13조(입학시기) 입학시기는 매 학년 시작 일로부터 4주일 전부터 시작 일로부터 4주일 이내로 한다.

제14조(입학결정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.

제15조(입학서류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보증인)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.

제8장 휴학·퇴학·환불 및 상벌

제17조(휴학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은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.

제18조(퇴학) 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퇴학으로 처리한다.

제19조(환불) 본 수원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원장의 판단에 의해 환불, 또는 환불처리가 되지 않는다.

제20조(징계)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.

1. 출석 정지
2. 퇴학

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

제21조(수업료, 입학금) 수업료는 자부담으로 일반영재·예비영재 입학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전형수수료는 추가 발생할 수 있다.

제22조(장학금) 실기평가를 통하여 실기우수장학생을 소수 선발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수여한다.

부 칙

① 이 제정 규정은 2011.10.01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에 사항은 이 규정으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.